

2022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2022 공공분야중심 표준 해석례

CONTENTS

번호	제 목	분 야	페이지
1	사망자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정의 (§2)	1
2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도 되는지?	다른 법률 규정 (§6)	3
3	사군구청이 사업승인 서류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지?		4
4	조례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수집 이용 제공 (§15, §17)	5
5	치안유지, 수색·구조 등 직무수행을 위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지?		6
6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수집한 아동의 정보를 타 기관에 공유할 때 정보주체에게 사전고지해야 하는지?		8
7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지?		9
8	통장이 전입 신고자의 전입 사실 여부를 확인해도 되는지?		10
9	불법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영업 신고 담당 부서가 보관 중인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18)	11
10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로 직원의 출입 기록을 제출할 수 있는지?		13
11	업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15
12	공단의 임원 채용 관련 자료를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17
13	자체 감사를 위하여 직원의 출입 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지?		19
14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타 부서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22
15	수당 지급 및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다른 공공기관에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24
16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를 촬영한 영상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지?		25
17	학교가 졸업생 명부를 총동창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26

번호	제 목	분 야	페이지
18	얼굴 사진이 생체정보에 해당하는지?	민감 정보 (§23)	27
19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지?		28
20	교통공사가 여객의 유실물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지?	주민등록 번호 (§24의2)	29
21	개인 또는 단속 권한 없는 공공기관 등이 교통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영상 정보 (§25)	31
22	기존에 운영 중인 CCTV에 다른 목적을 추가할 수 있는지?		32
23	비공개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33
24	예방접종 이상 반응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위탁 (§26)	35
25	SNS 등을 통한 이벤트를 할 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37
26	정보주체가 CCTV 열람을 요구할 때 법적 의무사항은?	열람 (§35)	39
27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예방접종 내역을 삭제할 수 있는지?	삭제 (§36)	40
28	민원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를 해야 하는지?	안전 조치 (§29)	42
29	엑셀 등 상용프로그램의 비밀번호 설정이 개인정보의 암호화에 해당하는지?		43
30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권한 없는 다른 직원에게 잘못 전달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	유출 (§34)	44
31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예외 (§58)	46
32	군부대에서 각종 상황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47
33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통계작성 목적으로 지방통계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49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본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는 일반 국민이 개인정보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조문의 표현이 일부 생략된** 경우가 있고, **법명이 약칭으로 기재된** 예도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망자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사망자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려고 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및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므로
 - 사망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사망자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사망자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유족의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사망자에 관한 정보만으로는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 수 있다면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 이 때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라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입수 가능성’은 결합에 필요한 다른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하여 이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시간, 비용, 기술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는 현재의 기술 수준이나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이나 비용, 노력이 비합리적으로 과다하게 수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2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도 되는지?

공공기관 또는 복지관 등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인 또는 복지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이용하여 업무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해야 하므로
 -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에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은 「병역법」이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
- 「병역법」에 근거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는 할 수 없고
 - 해당 기관에 안전성 확보조치가 되어있고 근무지 장의 승인을 받아 담당 직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조건에서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 임무 및 단순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수발·복사·파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경고 처분을 받게 되고 2회 이상 위와 같은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으면 같은 법 제89조의3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며
 - 만약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9조의4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됨

3 시·군·구청이 사업승인 서류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지?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관리처분 인가신청 서류를 관할 시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합원이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을 한 경우 관할 시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공개를 할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시·군·구청에 제출한 명부를 조합원이 시·군·구청에 열람 청구하여 열람할 수 있는지는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되며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 절차 등), 제120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에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정보공개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시·군·구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은 없음
- 해당 법률에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시·군·구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4 조례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용자의 동의 없이도 연락처와 주소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정부조직법」 및 각 기관별 직제 시행령·직제 시행규칙·개별 조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사무 이외에 「주민등록법」, 「국세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의미함
-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8항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서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2항 및 제8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의 연락처와 주소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5 치안유지, 수색·구조 등 직무수행을 위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지?

실종자 수색 및 범죄예방 순찰 등의 업무 목적으로 해경이 드론으로 촬영된 개인영상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각 기관별 직제 시행령·직제 시행규칙·개별 조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사무 이외의 다른 법령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 등을 의미하며
 -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는 법령 등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범죄예방·진압·수사,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작성 등은 「해양경찰법」 제14조에 따른 해양경찰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므로
 - 해당 업무수행을 위해 드론을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구지방경찰청의 드론을 이용한 영상정보 수집에 관한 건’(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101-002호 참조)에서 대구지방경찰청이 인명구조 등의 수색과 구조 현장을 지휘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른 업무로서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며
 - 경찰 인력의 투입만으로는 수색에 한계가 있기에 CCTV 영상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도 요구조자의 위치 파악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드론캠을 이용하여 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음

6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수집한 아동의 정보를 타 기관에 공유할 때 정보주체에게 사전고지해야 하는지?

교육부·교육청·지원청·학교 등(이하 '교육부 등')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수집·발굴된 정보를 공유받아, 이를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신속 보호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 주체에게 정보의 출처와 내용 등을 사전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 제2항 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수집한 아동의 정보를 교육부 등에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교육부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제공 동의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사안에서 교육부 등이 공유받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이 아닌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중 '제15조 제1항 제2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유받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 규정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출처·내용 등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음

7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제7항의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정부조직법」 및 각 기관별 직제 시행령·직제 시행규칙·개별 조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사무 이외의 「주민등록법」, 「국세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의미함
 - 또한,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는 법령 등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뜻함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제7항은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보장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며, 보장기관은 지역사회보장조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8 통장이 전입 신고자의 전입 사실 여부를 확인해도 되는지?

전입신고를 한 주민에 대해 통장이 주소지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전입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나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통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함
- 통장이 주소지 방문, 전화 등으로 전입을 확인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에서 규정한 사실조사 의무를 준수하기 위함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9

불법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영업 신고 담당 부서가 보관 중인 사업자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경관디자인과가 불법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영업 신고 담당 부서(보건정책과)에서 수집하는 사업자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제공 받아 이용할 수 있을까요?

-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불법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담당하는 부서가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사업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하부조직 간 개인정보의 제공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서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비록,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볼 수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04-051호 참조)

- 또한,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부과처분을 위하여 위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 「옥외광고물법」 위반자는 「옥외광고물법」에 명시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등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불법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영업 신고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행정청 또는 검사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불법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영업 신고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0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로 직원의 출입 기록을 제출할 수 있는지?

청사 방호·보안 및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수집한 직원의 출입 기록을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청사 방호·보안 및 사고 예방 목적으로 수집한 청사 출입 기록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2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목적 외 이용·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1-106-011호 참조)
-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04-050호 참조)에서 「인사청문회법」 제12조 제1항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지만, 인사청문은 공식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 요청되는 자료에는 개인에 대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인사청문회법」 제12조 제1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며

- 인사청문은 공직 후보자의 청렴성, 도덕성, 준법성 등을 사전적으로 살펴 공직 후보자의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공익적 목적이 매우 크고 국회가 소관 업무인 인사청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과 관련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 할 것인바, 인사청문을 위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나
 - 제출대상이 되는 자료는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고 자료의 제공이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는바, 국회의 제출 요구 자료가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로서 자료의 제공이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는 사항과 해당 자료와의 관계, 인사청문 대상의 중대성 및 구체성, 정보주체와 인사청문 대상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검토한 바 있음
- 따라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는 사항과 해당 자료와의 관계, 인사청문 대상의 중대성 및 구체성, 정보주체와 인사청문 대상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의 제출 요구 자료가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로서 자료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인정보처리자인 해당 기관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함

11 업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업무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국회법」 제128조는 국회가 국정감사 등과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과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인과 관련된 사항이 국정감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정확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자료의 진실성, 객관성, 충분성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보고, 서류 및 사진·영상물'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며 위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바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20-223호, 제2019-11-177호, 제2019-17-272호 참조)
-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나,
 - 국회의 제출 요구 자료가 국정감사 등에 직접 관련된 자료로서 자료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인정보 처리자인 해당 기관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
-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공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는 이용할 수 없다고 의결한 바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1-107-012호 참조)

12 공단의 임원 채용 관련 자료를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공단이 신규 임원 채용 시 임용대상자가 제출한 경력 사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은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과 관련된 사항이 지방의회의 안건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정확한 안건의 심의 및 준비를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위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바 있으며(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08-125호, 제2020-102-003호 참조)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경우에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감사·조사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개인의 비위 사실이나 특혜 등 특정 개인과 관계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위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바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1-108-014호, 제2021-108-015호 참조)

- 따라서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49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신규 임용대상자의 경력 사항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으나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개인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지방의회의 제출 요구 자료가 안전심의 또는 감사·조사 등에 직접 관련된 자료로서 자료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인정보처리자인 해당 기관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함

13 자체 감사를 위하여 직원의 출입 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지?

직원 중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등의 부당 수령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경우, 청사 방호·보안 목적으로 수집한 해당 직원의 출입 기록을 자체 감사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2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목적 외 이용·제공을 허용하고 있고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1-106-011호 참조)
-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은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 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1. 출석·답변의 요구,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은 감사기구의 자료제출 요구권과 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의 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자체 감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CCTV에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0조 제5호에 따른 복무 감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 감사기구의 장이 「공공감사법」에 따라 소속 직원의 복무 감사 등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진실성, 객관성, 충분성의 확보가 필수적인 점, 「공공감사법」 제20조 제5항에서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감사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바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1-106-011호 참조)

- 이에 비추어 볼 때,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자체 감사기관은 자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자체 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의 출입 기록을 이용할 수 있으나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자체 감사가 필요한 대상자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등의 부당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입 기록만을 처리하여야 할 것임

14

공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타 부서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가 「토지보상법」 제8조에 따라 타 부서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위반에 해당하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가 다른 부서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하부조직 간 개인정보의 제공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허용하고 있고,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 -14-133호 참조)
- 「토지보상법」 제8조 제1항에 목적 외 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로 등이 개설될 토지의 소유주 개인정보 등이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가 「토지보상법」 제8조에 따라 타 부서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의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함

15

수당 지급 및 수당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다른 공공기관에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공무원 수당 지급 및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정보주체인 공무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제1호부터 제9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5항에서 가족수당의 중복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1항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위임하고 있음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6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있고,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부양가족신고서에 기재된 배우자의 직장정보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배우자 등 직장정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보수지급 이전에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에 관하여 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표 등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개인정보의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16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를 촬영한 영상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지?

쓰레기 불법 투기자의 인적 사항 파악을 위하여 불법 투기자가 촬영된 영상자료에서 눈이나 신체 부위를 가린 후 무단투기 장소에 공개할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업무 수행과정에서 촬영한 불법 투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지역주민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일반원칙, 「개인정보 보호법」상 일반 원칙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으나(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3. 5. 27. 결정 참조)
 - 쓰레기 불법투기자 단속 및 과태료부과를 위해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 할 것이며, 해당 영상을 인근 주민에게 일대일 대면으로 확인시키는 것은 영상을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08-077호 참조)
- 쓰레기 불법 투기자의 인적 사항 파악을 위하여 불법 투기자가 촬영된 영상자료에서 눈이나 신체 부위를 가린 후 무단투기 장소에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의 제공은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개인정보 제공보다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도가 현저히 크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 쓰레기 불법 투기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인근 주민에게 일대일 대면으로 확인시키는 등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범위를 한정하여 정보주체인 불법 투기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임

17 학교가 졸업생 명부를 총동창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졸업생의 성명과 졸업 연도를 졸업생들의 동의 없이 총동창회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므로 졸업생의 성명과 졸업 연도는 개인정보에 해당함
 - 개인정보처리자인 학교가 졸업생의 개인정보인 성명을 제3자인 총 동창회에 제공하려면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18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부합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한편, 성명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일부 비식별처리 하더라도 졸업 연도, 반 등 다른 정보를 통해 개인을 알 수 있으므로 사전에 총동창회 등에 제공한다는 것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창회에서 동창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18 얼굴 사진이 생체정보에 해당하는지?

얼굴 사진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또는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생체정보에 해당하나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
 - 얼굴 사진으로 정보주체를 직접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그 자체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얼굴 사진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같이 제공되는 성명, 생년월일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르면 ‘민감정보’는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생체정보’를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여권이나 증명사진을 스캔하여 추출한 일반적인 얼굴 사진은 민감정보나 생체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 일반적인 얼굴 사진을 차후에 인증·식별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으로 처리할 경우 생체정보로 분류되며, 이를 통해 생성된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게 됨

19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지?

안면 정보 또는 지문 정보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2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1.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를 말함
- 기관에서 수집하는 지문·안면 정보는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로서 근태 관리를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안면 정보, 생체정보를 활용한 근태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20 교통공사가 여객의 유실물 처리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지?

「유실물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에 습득자, 신고자, 점유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이 있는데, 공사가 유실물 습득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등 처리할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와 관련 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고, 법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법령 조항이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유실물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등은 습득물 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에서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득물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당해 물건을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습득물 신고자인 교통공사가 「유실물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습득물 신고서식으로 습득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 아울러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에 유실물 취급기관으로 등록된 교통공사는 「유실물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신고 내용을 경찰청이 운영하는 유실물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교통공사의 자체 「유실물 취급내규」 별지 제2호 서식인 유실물 수령증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바가 없으므로 해당 서식을 통해 유실물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21

개인 또는 단속 권한 없는 공공기관 등이 교통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개인 또는 단속 권한 없는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통상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규정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큰 영상정보의 특성으로 인해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은 해당 교통단속 권한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03-045호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별도 안내판 등에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목적을 기재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찰청과 같이 교통단속 권한이 없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없음

22 기존에 운영 중인 CCTV에 다른 목적을 추가할 수 있는지?

불법 주·정차 단속용 또는 방법용으로 운영 중인 CCTV의 설치목적에 교통정보 수집 목적을 추가하여 해당 CCTV를 교통정보 수집분석용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청회·설명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8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설치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위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한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방법용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에 교통정보 수집·분석 목적을 추가하여 병행 활용할 수 있음

23 비공개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특정인들만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2.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공개된 장소란 도로, 공원, 광장,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 즉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의미함
- 따라서 특정인들 또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거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고
 - CCTV가 설치된 장소가 일반인은 출입이 불가하고 직원 및 허가받은 민간인 등 특정인들만 출입 가능한 장소는 ‘비공개장소’에 해당함
- ‘비공개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그 설치·운영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의 일반원칙이 적용됨
 - 비공개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여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구성원이나 출입·이용이 허가된 사람들의 동의를 받거나,

제6호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비공개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 아울러, 안내판 설치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는 비공개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정보주체가 직접 촬영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큰 만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자에게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4

예방접종 이상 반응으로 인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질병관리청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경우, 공단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은 법률, 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은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 및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①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에 의하여 위탁을 하여야 하고, ②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하며, ③ 수탁자를 교육·감독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병관리청이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여 대신 처리하도록 위탁하는 것은 위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들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관하여 별도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25

SNS 등을 통한 이벤트를 할 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이벤트 대행사를 이용하여 기관의 SNS 이벤트를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업무 위탁의 유형은 크게 개인정보의 수집·관리 업무 그 자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과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이 수반되는 일반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업무 위탁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모두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개인정보 이전의 목적이 다르고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등 법률적 관계도 전혀 다름
 - 업무 위탁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처리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고 위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제3자 제공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고 제3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됨
 -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제공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을 구분하는 것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단함(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참조)

- 따라서, SNS를 운영하는 기관과 이벤트 대행사와의 관계는 개인정보처리자인 기관이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만약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①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에 의하여 위탁을 하여야 하고, ②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하며, ③ 수탁자를 교육·감독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

26 정보주체가 CCTV 열람을 요구할 때 법적 의무사항은?

민원인이 분실물을 찾을 목적으로 기관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열람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개인정보의 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및 제46조 등에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등에서 정한 열람 제한·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하고,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열람 청구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 다만, 위 열람에 관한 규정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것이며 타인의 개인정보까지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6조에 따라 만약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영상에 대한 열람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열람을 요청한 정보주체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27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예방접종 내역을 삭제할 수 있는지?

본인의 예방접종 내역을 삭제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가 가능한가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은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을 거친 경우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의 수집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
- 「감염병예방법」 제33조의4 제2항은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자료로서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 사항’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이름·접종명·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 등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삭제의 요구에 따르지 않기로 한 사실, 그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제8항 별지 제10호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고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2조에서는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 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28 민원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를 해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메시지 발송시스템을 구축하고 메시지 발송 대상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행정망 서버에 저장하고자 하는데, 민원인의 개인정보 저장 시 암호화 조치를 해야 할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기술적 안전조치로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암호화의 대상과 관련하여, 모든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보호 수준은 높아질 수 있으나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은 커지게 되므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에서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로 고유식별 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하고 있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에서는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바이오정보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름·전화번호 등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반드시 암호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기술에 상응하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임

29

엑셀 등 상용프로그램의 비밀번호 설정이 개인정보의 암호화에 해당하는지?

엑셀, 한글 등 상용프로그램의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통해 파일을 암호화하는 것이 보호법상 암호화에 해당하나요?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1항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 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 이러한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해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에서는 ‘파일 암호화는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이동식 디스크, 보조 저장 매체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취급자 간에 네트워크상으로 파일을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Ⅲ-제2절-2.2. 업무용 컴퓨터·보조저장매체 암호화방식)
- 따라서 한글, 엑셀 등 상용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암호화를 적용하거나,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암호화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암호화 조치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음
 - ※ 파일 암호화 후 파일 제목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것은 암호화에 해당하지 않음

30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권한 없는 다른 직원에게 잘못 전달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권한 없는 다른 직원에게 잘못 발송하였을 때,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로 볼 수 있을까요?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를 말하고
 -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에 따르면 ‘유출’에는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 제공, 누출, 누설된 모든 상태가 포함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하며, 개인정보의 유출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당해 개인정보를 모르는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권한 없는 다른 직원에게 잘못 발송한 경우, 내부 직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삭제, 안전조치 등을 지시하여 오발송을 정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난 상태로 보기는 어려워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1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언론이 취재를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이 일부 제외된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CCTV의 영상정보를 언론사에 취재·보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언론·종교단체·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 언론사가 정보주체 이외의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적용 대상으로 언론·종교단체·정당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언론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CCTV의 영상정보를 언론사에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함

32

군부대에서 각종 상황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군부대의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 태세 2급 이상 발령, 자체 훈련, 을지·충무훈련 등의 상황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 목적’과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0-167호, 제2019-14-222호 참조)
 - 또한, 상기 결정례에 따르면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 태세 2급 이상 발령, 통합방위훈련(자체 훈련, 지상 협동 훈련, 대침투 종합훈련, 후방지역 종합훈련), 을지·충무훈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며 ‘테러 발생’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고 ‘재해·재난 및 구급 상황’은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군부대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근거하여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로부터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 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33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통계작성 목적으로 지방통계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통계작성 목적으로 지방통계청에 제공할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이나 제18조에 따른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3-176호 참조)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통계청과 함께 개발하고자 하는 통계가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나 승인통계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지정통계나 승인통계 작성을 위한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적용이 제외되지 않으므로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처리 및 결합 후 통계를 작성해야 하며, 통계작성을 위해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하여야 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최소화, 적법한 개인정보 수집, 익명 또는 가명정보 처리 원칙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획 및 집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양수연 심사총괄담당관

유영관 심사총괄담당관 사무관

박은지 심사총괄담당관 주무관

이태형 심사총괄담당관 전문연구원(변호사)

2022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공 개 일	2022년 10월
공 개 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 페이지	www.pipc.go.kr
상 담 문 의	☎ 02-2100-3043

2021 표준 해석례 수정본

CONTENTS

번호	제 목	분 야	카테고리	페이지
1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가 개인정보인지?	일반	개인 정보 정의 (§2)	59
2	아파트 공식 카페에 동·호수를 아이디로 사용해도 되는지?	공동주택		60
3	결제대행사에 제공하는 ID와 결제상품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일반		61
4	개인의 차아 엑스레이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일반		62
5	지하철 이용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공공서비스		63
6	회사건물 출입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일반		64
7	직급별 전체 직원의 급여 총액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일반		65
8	코로나 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도 되는지?	공공서비스		66
9	회사에서 순찰자 순찰정보 등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해도 되는지?	일반		67
10	CCTV 실시간 모니터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영상정보		68
11	교통법규 위반 차량 범칙금 납부 여부가 개인정보인지?	공공서비스		69
12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공공서비스		70
13	이용약관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보관해도 되는지?	일반	다른 법률 규정 (§6)	71
14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이름만 공개해도 위법한지?	공공서비스		72
15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영상을 공개해도 되는지?	공동주택		73
16	졸업앨범에 교사의 사진을 동의받지 않고 넣어도 되는지?	공공서비스	수집 이용 (§15)	74
17	지인(제3자)으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되는지?	일반		74
18	입주자 명부 소유자 연락처로 리모델링 안내를 해도 되는지?	공동주택		75
19	입주민 차량관리 명목으로 마구잡이식 개인정보 수집을 해도 되는지?	공동주택		76
20	민원처리를 위해 다른 직원에게 민원인 전화번호를 전달해도 되는지?	공공·일반		77
21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족도 조사를 해도 되는지?	공공서비스		78
22	코로나 방역수칙 관련 펜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는?	공공서비스		79
23	개인 진료기록을 의료진이 사전에 열람한 경우 불법인지?	일반		80

번호	제 목	분 야	카테고리	페이지
24	학원에서 학생들 비상연락망을 제작·배부해도 되는지?	일반	3차 제공 (§17)	81
25	병원에서 환자 연락처를 약국에 제공해도 되는지?	일반		82
26	학교에서 학생들 단체 사진 등을 공유(공개)해도 되는지?	공공서비스	목적 외 이용 제공 (§18)	83
27	아파트 게시판에 폐기물 무단투기자 사진을 공개해도 되는지?	공동주택		84
28	관리사무소에서 재건축추진위에 소유자 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공동주택		85
29	CCTV 사고영상을 직원 교육에 이용해도 되는지?	영상정보		86
30	근로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해도 되는지?	일반		87
31	재개발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열람 시 동의가 필요한지?	공동주택		88
32	자체감사를 위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해도 되는지?	공공서비스		89
33	청사 CCTV 영상을 기관 자체감사에 이용해도 되는지?	공공·영상		90
34	공공기관 근무자의 소속, 성명, 내선번호를 공개해도 되는지?	공공서비스		91
35	범죄 수사와 관련되면 개인정보를 꼭 제공해야 하는지?	공공서비스		92
36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직원 복무점검에 사용해도 되는지?	영상정보		93
37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 CCTV 영상을 입주민이 열람해도 되는지?	공동주택		94
38	차량사고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CCTV 영상을 제공해도 되는지?	영상정보		95
39	퇴직한 직장에서 오는 문자메시지를 오지 못 하게 할 수 있는지?	일반		파기 (§21)
40	회원 개인정보 파기 시 연계 회원번호도 파기해야 하는지?	일반	97	
41	개인정보를 보유기간 경과 후 연장 보존해도 되는지?	일반	98	
42	법정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연장 보존해도 되는지?	일반	99	
43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때 개인정보는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는지?	일반	100	
44	온라인쇼핑몰 부정행위 고객의 개인정보를 영구보존해도 되는지?	일반	101	
45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매일 파기해야 되는지?	일반	102	
46	신규회원의 추천인 개인정보 입력을 암묵적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일반	동의 (§22)	103
47	SNS로 회원가입 시 동의받지 않고 추가정보를 수집해도 되는지?	일반		104
48	ARS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를 받아도 되는지?	일반		105

번호	제 목	분 야	카테고리	페이지
49	주민등록증의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수집할 수 있는지?	공공서비스	주민 번호 (§24의2)	106
50	세입자 전세대출에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한지?	공동주택		107
51	가족수당 지급을 위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도 되는지?	일반		108
52	가정집에 IP카메라를 장착, 운영하면 불법인지?	영상정보	영상 정보 (§25)	109
53	직장 내 사무실에 직원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영상정보		110
54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를 모니터링해도 되는지?	공동주택		111
55	아파트에서 불법(유턴)차량 신고용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공동주택		112
56	공동주택 복도에 입주인이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공동주택		113
57	CCTV 촬영 안내문은 CCTV마다 부착해야 하는지?	영상정보		114
58	CCTV 안내문에 꼭 책임자 이름을 넣어야 하는지?	영상정보		115
59	CCTV 영상을 노트북에 송출하여 직원 근태관리를 해도 되는지?	영상정보		116
60	CCTV로 모니터링만 해도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영상정보		117
61	공개된 채혈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영상정보		118
62	키즈카페는 CCTV 영상을 며칠간 보관해야 하나요?	영상정보		119
63	개인정보 처리 위탁자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하는지?	일반	처리 위탁 (§26)	120
64	간편결제사에 고객의 결제를 맡기면 위수탁에 해당하는지?	일반		121
65	산업안전보건법의 직무교육 기관은 수탁사에 해당하는지?	공공서비스		123
66	병원을 영업양도하면서 고객 정보를 넘길 때 고지해야 하는지?	일반	이전 (§27)	124
67	CCTV 열람 신청 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지?	영상정보	열람 (§35)	125
68	이삿짐센터 직원의 고객 주소 누설이 법 위반인지?	일반	위반	126
69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공문발송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	일반		127
70	관리사무소 소장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위법한지?	공동주택		128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 본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는 일반 국민이 개인정보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조문의 표현이 일부 생략된** 경우가 있고, **법명이 약칭으로 기재된** 예도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가 개인정보인지?

- (문의) 행정기관 민원 담당자입니다. 관내에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의 자동차 등록번호 일체 또는 차대번호 일체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이 2가지 사항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등록원부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9-16-260호 참조)

- ◆ 일반인이 특정인의 개인정보임을 알아보기 어려운 대상이라도 주변인물, 관련 업무 처리자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

2 아파트 공식 카페에 동호수와 실명을 아이디로 사용해도 되는지?

■ (문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원가입 시 동·호수와 실명을 아이디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또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경우 동·호수를 아이디로 쓸 수 있으나 개인정보 안전관리 유의 필요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아파트 동·호수는 입주자들의 성명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동·호수를 아이디로 쓰는 경우 예기치 않게 과도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홈페이지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19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가입단계에서 충분히 알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함

3 결제대행사에 제공하는 ID와 결제상품정보가 개인정보인지?

- (문의) 당사는 고객이 상품을 구매 시 결제대행사에 고객 ID와 결제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결제대행사로부터 결제처리결과만 통보받고 있습니다. 이때 고객 ID와 결제상품 정보가 개인정보인가요?
- (답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고객 ID와 결제상품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고객 ID와 결제상품정보는 특정 개인의 구매내역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함

4 개인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 (문의) 개인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이 개인정보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를 참고할 만한 곳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답변) 치아 엑스레이 사진에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일반적으로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치아 엑스레이 사진은 법에서 보호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나, 진료기록 등 해당 정보에 대한 설명 데이터가 있는 치아 엑스레이 사진은 개인정보에 해당됨

5 지하철 이용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 (문의) OO 지하철 공사 개인정보 담당자입니다. 탑승객의 승하차역, 이용일 및 이용시각이 개인정보인지요?

■ (답변) 식별가능한 특정 개인의 지하철 승하차역, 이용일, 이용시각 등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따라서, 탑승객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이용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으나,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의 승하차역, 이용일, 이용시각 등의 정보 자체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홍길동이 2021년 7월 1일 08시 30분 충무로역에서 전철을 갈아탐(개인정보)
2021년 7월 1일 08시 30분 충무로역의 환승인원은 약500여명임(개인정보 아님)

- 한편,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 및 장소에 존재하였다는 정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5조 등의 보호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됨(「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6 회사건물 출입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 (문의) OO 빌딩의 관리를 맡고 있는 업체의 직원입니다. OO빌딩 입주사인 A사에서 소속직원들의 건물 출입기록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개인정보라고 제공할 수 없다고 거절하니 법적 근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 (답변) 빌딩의 출입기록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함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따라서, 고객사 직원의 빌딩 출입기록은 객관적 사실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

7 직급별 전체 직원의 급여 총액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 (문의) A기업 인사노무관리담당자입니다. 회사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및 비노조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하여 특정인을 유추할 수 없는 직급별 전체 직원의 연봉액 등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요?
- (답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 개인이 특정되지 않은 통계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노조에서 요구하는 특정 직급 전체 인원의 급여총액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 내지는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이 특정되지 않은 통계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단, 특정 직급의 전체 인원이 극소수여서 특정 개인의 급여를 쉽게 알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

8 코로나 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도 되는지?

- (문의) 감염병 확진자 관련하여, OO시 #9번 확진자 OO센터 OO부장 등 직함이나 소속기관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공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OO 부분은 실제 행정지역명과 소속기관명이 들어갈 예정

- (답변) 행정구역, 소속기관·직함 등의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공개해서는 안 됨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일반적으로 행정구역, 소속기관명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4번 확진자, 직책 또는 직함’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 확진자에 대한 동선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 최소한의 범위로 공개 가능
 -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1판」(중앙방역대책본부 2020.10.07.)에 따라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① 개인별 이동경로 형태가 아니라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를 목록 형태로 공개 ②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장소를 공개하지 않음

9 회사에서 순찰자 순찰정보 등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해도 되는지?

■ (문의) 방호직 특성상 근무 중 순찰을 실시하는데 관리자가 공개적인 게시판에 순찰보고서라는 항목으로 근무자의 성명, 순찰포인트, 누락여부 등을 기재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닌지?

■ (답변) 법인의 정보이면서 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는 위법이라 단정하기 어려움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따라서,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상호), 소재지 주소 및 전화번호, 업무별 연락처, 영업실적 등 전적으로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반면,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등 사업체 운영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 대표자 성명을 비롯한 임원진과 업무 담당자의 이름, 개인 연락처, 사진 등은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음
- 결국, 회사 순찰근무자의 순찰 현황은 법인에 대한 정보이면서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도 있어 내부 공개가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공개하는 경우 성명의 일부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함이 바람직함

10 CCTV 실시간 모니터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 (문의) CCTV에 찍힌 영상이 실시간으로 출력되고 있는 모니터링 화면의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까?

■ (답변) 영상정보에 나타난 정보주체의 외관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함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CCTV에 촬영된 사람의 외관, 자동차등록번호 등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함. 물론 얼굴 등 정보주체를 직접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그 자체로 개인정보에 해당함

11 교통법규 위반 차량 범칙금 납부 여부가 개인정보인지?

- (문의) 특정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한 자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 대해 범칙금 부과 처분을 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추가로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범칙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범칙금 납부 여부'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 (답변) 범칙금 납부 여부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이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함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신고인은 이미 알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 소유자의 정보를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며, 범칙금 납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3-15호 참조)

12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 (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변환한 연계정보(이하 'CI')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답변) CI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인을 식별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CI는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한 정보로서 복원이 불가능하고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특정 개인에 고유하게 생성 및 귀속되어 유일성을 가지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활용되므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함

13 이용약관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보관해도 되는지?

■ (문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업체입니다. 당사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이용약관 내 보유기간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보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이용약관 내 보유기간은 2개월이며, 「전자상거래법」에서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유기간은 5년임

■ (답변)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해당 기간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함

-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존할 수 있음
-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은 보존기간 5년을 적용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음

- ◆ 1.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 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14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이름만 공개해도 위법한지?

■ (문의)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목록에 개인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이름을 공개한 경우 위법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함

-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음

- 또한, 민간의 경우에도 대표자 성명을 비롯한 임원진과 업무 담당자의 이름, 개인 연락처, 사진 등은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음

15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영상을 공개해도 되는지?

■ (문의)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주민이 참관할 수 없었던 회의영상 공개를 요구하였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공개가 안 되는 게 맞는지?

■ (답변) 회의 영상을 촬영·공개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8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함
 - 한편, 회의록과 별개로 회의에서 영상을 촬영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해당 영상을 공개하려면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았다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 회의내용 중 입주민 등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도 동일
 - 따라서, 동의를 받지 못한 정보주체 등의 개인정보가 회의 중 영상을 통해 촬영된 경우 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공개된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회의영상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중계 또는 게시하는 경우 법 제19조에 위반될 수 있음

16 졸업앨범에 교사의 사진을 동의받지 않고 넣어도 되는지?

■ (문의) 학생들의 졸업앨범을 제작하려 합니다. 여기에는 교직원들의 사진과 연락처가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교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만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답변) 졸업앨범에 교사의 사진을 넣으려면 동의를 받아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 졸업앨범을 제작할 때 앨범에 수록될 교직원에게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함

17 지인(제3자)으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되는지?

■ (문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기업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서비스에 대해 마케팅 캠페인을 하면서 참가자에게 지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 (답변) 지인(제3자)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수 없음

- 일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39조의3 제1항에 따라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 두 경우 모두 정보주체가 아닌 지인(제3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함

18 입주자 명부 소유자 연락처로 리모델링 안내를 해도 되는지?

- (문의) OO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입주자명부를 통해 입주민과 소유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단체문자를 발송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OO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사무소는 리모델링업무를 보는 곳이 아니니 리모델링관련 업무는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전화 000-0000-00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소유자로부터 안내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안내 문자를 발송할 수 없음

-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 소유자에 대한 리모델링 관련 안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더라도 리모델링과 관련한 단체 문자를 보낼 수 없음

- ◆ 관리규약에서 제공하는 입주자명부 양식에는 ‘비상시 연락’을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승강기 고장, 화재 등 사고,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고지를 위해 입주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19 입주민 차량관리 명목으로 마구잡이식 개인정보 수집을 해도 되는지?

■ (문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아파트 내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단지 내 주차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입주여부 등을 확인하고 주차증을 발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수집할 수 있을까요?

■ (답변) 관리사무소(관리주체)는 주차차량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아파트 관리사무소(관리주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아파트 관리사무소(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업무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입주민 차량등록 등 주차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개인정보 수집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함

- 또한, 가족관계 여부 등 확인행위로 충분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확인 후 서명을 받고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함

- ◆ 수집정보 : 입주자 성명, 동·호수, 차량등록번호(차종), 긴급 연락처
 - ※ 방문차량 : 방문대상 성명, 동·호수, 차량등록번호(차종), 긴급 연락처
- ◆ 확인정보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은 필요한 경우 확인 후 서명받고 돌려줌
 - ※ 서류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정보주체에게 돌려주는 것은 확인행위로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지 않음

20 민원처리를 위해 다른 직원에게 민원인 전화번호를 전달해도 되는지?

- (문의) 고객응대 등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직원에게 민원을 전달하고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요?
- (답변) 민간은 동의를 받거나 계약체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화번호 전달이 가능하나 공공은 법령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 전달이 가능
 - (민간)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4호)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만약 물건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등 계약과 관련한 민원의 처리인 경우 불가피하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 (공공) 공공기관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한 민원에 대해 처리 담당자 지정 및 처리 협조 등을 위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음
 - 다만, 권한 없는 직원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의 목적 외 이용 및 개인정보 노출에 해당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넘어서 유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인정보처리자 내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사이에 민원인의 개인정보 전달은 동일한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임

21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족도 조사를 해도 되는지?

- (문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고객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되는지요?

- (답변) 민간은 동의를 받거나 계약체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 만족도 조사가 가능하나 공공은 법령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족도 조사가 가능
 - (민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나
 - 물건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등 계약과 관련한 만족도 조사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 (공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음

22 코로나 방역수칙 관련 펜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는?

- (문의) 관광지 펜션을 운영하면서 감염병 예방에 따른 입장객 제한을 위해 5인 이상 투숙 시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의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요?
- (답변) 펜션 운영자는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일시적으로 투숙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나, 수집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 음식점 및 숙박업소 운영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집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함

- ◆ 수집정보 : 예약자 성명, 차량등록번호(차종), 긴급 연락처
- ◆ 확인정보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은 필요한 경우 확인 후 서명받고 돌려줌

23 개인 진료기록을 의료진이 사전에 열람한 경우 불법인지?

■ (문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 후 다시 재입원하였을 때 1차 입원내역을 환자가 열람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동 간호사가 진료목적으로 열람하였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 (답변) 환자의 동의를 받아 1차 진료기록을 사전 열람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음

- 따라서 재입원 환자의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1차 진료기록을 사전 열람하려면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24 학원에서 학생들 비상연락망을 제작·배부해도 되는지?

■ (문의) 저희 학원에서는 원활한 학생 관리를 위하여 학생 및 그 보호자(학부모)의 연락처를 수집하여 비상연락망을 만든 후, 학생들에게 배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학생(또는 법정대리인)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학생들의 비상연락망을 제공할 수 있음

- 학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다만, 만 14세 미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 14세 이상의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해서는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함

25 **병원에서 환자 연락처를 약국에 제공해도 되는지?**

■ **(문의)** 약국에서 저희 병원 처방전을 제출한 환자분께 약을 잘못 조제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급히 그 환자분 연락처를 물어보는데, 환자분 연락처를 약국에 알려줘도 되는 건가요?

■ **(답변)** 복약 처방을 잘못된 약국에 환자의 연락처를 제공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병원에서 위 규정들에 따를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환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약국에 제공할 수 있으나, 사전에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 하여야 함(「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26 학교에서 학생들 단체 사진 등을 공유(공개)해도 되는지?

■ (문의) 우리 학교에서는 수련회, 운동회 등 행사 때 사진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행사 때 찍은 사진(학생, 학부모, 선생님 등이 찍힘)을 졸업앨범에 수록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도 되는지?

■ (답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단체사진을 공유 및 게시할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따라서, 학교는 정보주체(학생, 학부모, 선생님 등)로부터 동의를 받아 사진을 제3자(재학 중인 학생들, 학교 홈페이지 회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음

27 아파트 게시판에 폐기물 무단투기자 사진을 공개해도 되는지?

■ (문의) 아파트 단지 내 폐기물 무단투기자의 사진, 관리비 미납자 등의 성명, 동·호수를 단지 내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에 게시해도 되는지?

■ (답변) 폐기물 무단투기자 사진, 관리비 미납여부 등을 공개할 수 없음

-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관리사무소가 폐기물 무단투기자 사진, 관리비 미납여부 등을 입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성명, 동·호수 등 개인정보를 게시할 수 없으나, 독촉 안내문 게시 및 개별 연락 등은 가능함

28 관리사무소에서 재건축추진위에 소유자 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 (문의)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관리사무소가 보유한 아파트 소유자분들의 성명, 연락처를 달라고 하는데, 소유자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이지요?
- (답변) 공동주택 소유주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 재건축추진위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유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재건축추진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음

29 CCTV 사고영상을 직원 교육에 이용해도 되는지?

■ (문의) 저희 병원에서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목적으로 설치해둔 CCTV에 안전 사고가 발생할 뻔한 모습이 촬영되었는데요, 직원들의 사고예방 교육을 위해 이 영상을 이용해도 될까요?

■ (답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영상정보를 사고예방 교육에 이용할 수 있음. 다만,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조치하는 것이 바람직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통해 수집한 영상을 직원들 사고예방 교육을 위하여 이용하려면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다만, 사고 영상이 공개될 경우 예상치 못하게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조치 하여 이용하는 방안이 더욱 바람직함

- 참고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촬영된 영상의 경우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 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30 근로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해도 되는지?

■ (문의) 단체협약에 하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자 평가결과를 노동조합에 제공하라는 문항이 있지만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인 노동조합에게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 만약 하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자 평가결과에 이름 사이에 *(예, 홍*동)등 비식별 조치하여 제공해도 되는지요?

■ (답변) 근로자 평가결과에 노동조합 제공에 대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동의해야 제공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음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정한 경우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음(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판결 참고)

-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할 수 있음

- 참고로, 단체협약을 맺을 때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방지 및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어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됨

31 재개발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열람 시 동의가 필요한지?

■ (문의) 우리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 등이 요청할 경우 조합원 명부를 열람시켜주고 있으나, 일부 조합원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 명부에 포함된 조합원 상호 간 정보제공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가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함. 다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열람이 허용되지 않음

◆ 개인정보처리자(재개발조합 등)로부터 제공받은(열람한) 내용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 제19조에 위반될 수 있음

32 자체감사를 위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해도 되는지?

■ (문의) 기관 내부에서 자체감사를 위하여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지?

■ (답변) 민간은 소속 직원의 동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은 공공감사법에 근거하여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음

○ (민간) 민간기관(업체, 단체 사무소 등)은 원칙적으로 소속 직원의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감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자체 감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가능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영업비밀의 침해 우려 등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우선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함이 바람직함

○ (공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3항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공무원 및 소속 직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6-11-19호 참조)

- 따라서 공공기관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목적 외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33 청사 CCTV 영상을 기관 자체감사에 이용해도 되는지?

- (문의) 소속 공무원의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의 부당수령 등에 대한 제보나 의심 정황 발생 시, 제보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사에 방호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 (답변) 민간은 소속 직원의 동의 또는 노사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은 「공공감사법」에 근거하여 청사의 CCTV 영상을 자체감사에 이용할 수 있음
 - (민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할 수 있으므로 소속직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CCTV 영상정보를 자체감사에 이용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음
 - (공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3항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공무원 및 소속 직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1-106-011호 참조)
 - 따라서, 공공기관이 청사관리 목적으로 설치하여 수집한 CCTV 영상정보를 자체감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정보주체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4 공공기관 근무자의 소속, 성명, 내선번호를 공개해도 되는지?

- (문의) 공공기관의 조직도에 공개되는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소속, 이름, 내선번호가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인지 아니면 공개해도 무방한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위원회 위원, 통리장 등의 성명 및 개인정보가 아닌 업무 전화번호·메일 등을 공개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비공개정보에서 제외함
 - 따라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위원회 위원, 통리장 등의 성명을 공개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아닌 업무별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를 공개할 수 있음

35 범죄 수사와 관련되면 개인정보를 꼭 제공해야 하는지?

■ (문의) 최근 경찰서에서 수사에 필요한 사항이니 개인정보(성명, 주소, 이력)를 제공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꼭 제공해야 하나요?

■ (답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때 민간·공공 모두 제공할 수 있음

○ (공통)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민간기관은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영장, 증거보전결정 등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민사소송법」의 증거보전결정, 문서제출명령 등에 따라서도 제공 가능

○ (공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36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직원 복무점검에 사용해도 되는지?

■ (문의) 회사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에 의하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교통사고 상황의 파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금 관련 및 인사평가, 근무평정에 감점의 요인으로 영상정보를 활용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지요?

■ (답변) 직원 동의를 받아 회사차량 내부에 블랙박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근태관리 등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노사협의를 거쳐야 함

○ 회사차량 내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이 적용되지 않아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 범위에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다만,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달리 영상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함

- 한편, 사업장에서 근로자 감시 설비로 CCTV를 설치하려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4호에 따라 노사협의 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서 동의를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회사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인 직원들로부터 영상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함

37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 CCTV 영상을 입주민이 열람해도 되는지?

■ (문의) 아파트 입주민이 본인 이외 특정 시간대 승강기 내부 이용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에서는 동의를 필요한 사항으로 경찰관 입회하에 검색이 가능하다고 통보하고 있는데, 적절한 처리인지요?

■ (답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경찰 입회하에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따라서, 관리사무소는 해당 CCTV 영상에 수록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열람을 허용하되, 관리사무소에서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 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시켜 열람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함
- 한편,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 현장에 입회한 사실만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제3자에게 영상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근거는 되지 않음

38 차량사고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CCTV 영상을 제공해도 되는지?

■ (문의)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간 사고 확인을 위해 차주(정보주체)의 보험사에서 열람 요청 시 차주의 영상자료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정보주체는 대리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요구 등의 절차를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이 때 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방법에 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39 퇴직한 직장에서 오는 문자메시지를 오지 못 하게 할 수 있는지?

■ (문의) 안녕하세요. 2017년에 퇴직한 곳에서 아직도 단체 문자 메시지가 제 휴대폰으로 전송이 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 어떤 서류에 동의했는지 모르겠지만, 퇴사하였다면 그 정보가 삭제되어야 맞지 않은가 싶어서요.

■ (답변) 해당 직장에 개인정보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를 요청하여 원치 않는 메시지 전송을 정지시킬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

- 한편, 법 제36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때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된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 한편, 정보주체로부터 처리의 정지를 요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등을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됨

40 회원 개인정보 파기 시 연계 회원번호도 파기해야 하는지?

■ (문의) 회원관리 시스템에서 회원 탈퇴 시,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는 모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이때, 생성정보였던 회원번호 000001도 함께 파기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회원번호 신규 생성 등을 위하여 회원번호만 따로 순차적으로 관리하려 합니다.

■ (답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숫자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파기 불필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따라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는 모두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함

- 다만, 법 제58조의2에 따라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따라서, 관련 정보가 모두 파기되어 연계 생성된 회원번호를 더 이상 누구의 정보인지 알아볼 수 없다면 이는 익명 정보로서 파기하지 않아도 됨

41 개인정보를 보유기간 경과 후 연장 보존해도 되는지?

■ (문의)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대해 '회원탈퇴 하는 즉시 삭제'로 고지하고 있으나, 쿠폰 부정사용 등 불량회원을 식별하기 위해 일부 개인정보를 탈퇴 후 1개월 동안 보존하고 있는 경우, 수집동의서에 회원탈퇴 후 1개월까지 보관이라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 (답변) 개인정보 연장보관에 대한 동의를 받아 연장보관 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연장 보존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회원이 탈퇴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다만 회원 가입 시 혹은 탈퇴 이전에 연장 보존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음

42 법정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연장하여 보존해도 되는지?

■ (문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등 개인정보 보존기간을 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결제와 관련하여, 7년 전 기록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 보존기간 이상 개인정보를 보존해도 되는지요?

■ (답변) 고객에게 연장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법령에서 보존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보존기간이 경과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나, 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고객에게 알리고 새로 동의를 받으면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음

43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때 개인정보는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는지?

■ (문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급하는 지류 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1항(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에 따라, 전자영수증을 휴대폰으로 발급할 경우, 보존기간은 몇 년간 보존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대금결제 및 재화 등 공급에 관한 기록의 경우 5년간 보존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한편, 같은 법 제6조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음

- 따라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관련 자료 보존 기간에 따라 보존이 가능하고,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함(구체적인 기간은 13번 답변 참조)

44 온라인쇼핑몰 부정행위 고객의 개인정보를 영구보존해도 되는지?

■ (문의) 안녕하세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각종 이벤트를 개최할 때 별도 본인인증이 없는 간편가입 회원도 ID별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자, 이를 악용하여 수백개의 ID를 생성하여 멤버십포인트를 적립 및 사용하는 회원이 있어 회원가입 동의를 받아 부정고객에 한해 개인정보를 '영구' 보존하면서 걸러내려고 하는데, 해도 괜찮은지요?

■ (답변) 개인정보 영구 보존은 보존 기한이 없으므로 법에 위반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따라서, 별도의 보존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까지 보유한다는 형태의 동의를 구하면 되나, '영구 보존'은 이러한 기한이 없으므로 법에 위반됨

◆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영구보존할 수 있음

45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매일 파기해야 되는지?

■ (문의)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의료법」 보존기간에 따라 환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매일 같이 수집되는 의료기록들에 대하여 정확히 보존기간이 지나 파기하려면 매일 파기를 진행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는지요?

- ① 2020.12.04. 진료기록의 파기일자 : 2025.12.04.
- ② 2020.12.05. 진료기록의 파기일자 : 2025.12.05.

■ (답변) 보존기간 만료 후 5일째 파기가 허용되므로 최대 5일 단위 주기로 파기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태 등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므로 최대 5일 단위 주기로 파기할 수 있음

-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해 파기가 지체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된 즉시 파기하여야 함

46 신규회원의 추천인 개인정보 입력을 암묵적 동의로 볼 수 있는지?

■ (문의) 서비스 신규 가입자의 추천인 이벤트에 신규 가입자는 기존 가입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4자리를 입력하여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추천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기존가입자의 암묵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암묵적 동의 또는 포괄 동의 형태는 인정되지 않음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39조의3 제1항에 따라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이 때 동의의 방법은 법 제22조에 따름

-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고 제3자로부터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법 위반이며, 암묵적 동의 또는 포괄 동의 형태는 인정되지 않음
- 예를 들어, 이벤트 주체가 기존 가입자에게 무작위 값으로 된 추천인 코드를 발급하고 이를 제공받은 기존 가입자가 자기 추천인 코드(개인정보)를 지인에게 제공하여 이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이벤트를 위해 발급한 추천인 코드(개인정보)를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47

SNS로 회원가입 시 동의받지 않고 추가정보를 수집해도 되는지?

■ (문의) A사에서 회원가입 방법 중 하나로 SNS를 통한 회원가입(소셜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SNS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이용자로부터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을 수집 및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A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만 SNS 간편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항목으로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을 수집하고 있다고 명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지요?

■ (답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추가정보를 수집·이용하면 법 위반에 해당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39조의3 제1항에 따라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이 때 동의의 방법은 법 제22조에 따름

- 따라서, 제3자인 SNS사가 동의 받은 이외의 추가 정보를 수집·이용하면서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방침에만 기재한 경우 법에 위반됨

48 ARS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를 받아도 되는지?

■ (문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홍보 자료를 제공하고 포인트를 적립하여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ARS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를 받으려 하는데 가능한지?

■ (답변)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를 받기 위해 ARS를 이용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서면,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다만, 동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으므로 동의받은 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 만약 전화로 동의를 받을 경우 전화를 건 사실만으로 동의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특정 번호를 누르거나 동의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방법으로 동의의 의사표현을 받을 것을 권장함

49 주민등록증의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수집할 수 있는지?

■ (문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 사업자가 주민등록증을 수집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어느 정도 수집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민등록번호 첫 번째 뒷자리,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사진 중에서….

■ (답변) 이름, 생년월일, 성별,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사진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므로 동의를 받아 수집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

- 이 때 주민등록번호란 「주민등록법」 제7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생년월일, 성별을 포함한 13자리의 번호임

- 따라서 이름, 생년월일, 성별,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사진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므로 동의를 받아 수집할 수 있음

50 세입자 전세대출에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한지?

■ (문의) 얼마 전 저는 집주인으로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다고 하여, 부동산 중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찍어 보내달라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도 되는지요?

■ (답변) 집주인이 금융기관에 질권설정을 하는데 있어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생년월일 및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4조의2 등에 따라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함

- 그러나, 전세대출에서 집주인은 금융기관에 제3채무자로서 질권설정을 하는 것이므로 실명제와 직접 관련이 없고 금융기관은 사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생년월일 및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음(「주민등록법」 제25조 (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 채권채무 관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다만, 채권채무 관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으므로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도록 뒤 6자리에 대해 비식별조치가 필요함

51 가족수당 지급을 위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도 되는지?

■ (문의) 현재 회사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할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임직원의 가족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 지급을 위해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도 수집, 이용할 수 있는지요?

■ (답변) 가족수당 계산을 위하여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 임금대장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도록 하였으므로 근로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는 있으나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근거로는 볼 수 없음

- 따라서, 가족수당 계산을 위하여 생년월일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을 수 있음

52 가정집에 IP카메라를 장착, 운영하면 불법인지?

■ (문의) CCTV로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으나 가정집에 IP 카메라를 장착하여 본인이 살고 있는 집(공간)도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 (답변) 순수한 사적 공간에 IP카메라의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운영 및 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로 정의되어 있음

- 건물의 현관·복도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고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받으며, 그렇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법 제15조의 적용을 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에서 제외됨

- 따라서, 택시, 버스 등 영업용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외부(차량, 도로 등)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는 일정한 공간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법 제25조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법령에 따라서 CCTV로 공개된 버스 내부를 촬영하는 경우 해당 법령의 규정이 우선하나,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됨

- 한편, 자신이 살고 있는 집안은 '공개된 장소'가 아닌 순수한 사적(私的) 공간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IP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으나, 운영 및 이용 과정에서 다른 정보주체와의 관계 및 상황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집안에 설치 후 이웃집 또는 공개된 장소의 다른 정보주체를 촬영하는 행위 등은 설치·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면 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53 직장 내 사무실에 직원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 (문의) 40인 이상 근무하는 사무실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직원들과 협의 없이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닌지요?

- (답변) 사무실 출입구 등에 보안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동의 없이 가능하나, 사무실 내에 직원 감시 등 목적으로 설치하려면 직원의 동의나 노사협의 필요
 - 공개된 장소가 아닌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적용되지 않아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 범위에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한편, 사업장에서 근로자 감시 설비로 CCTV를 설치하려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4호에 따라 노사협의 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서 동의를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음

54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를 모니터링해도 되는지?

- (문의) 아파트 내 무단 폐기물 투기, 시설물 파손 등의 책임소재 확인과 관리규약에 따른 위반금 부과를 위해 관리사무실에서 CCTV를 확인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설치목적 범위 내에서 영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음
 - 공동주택처럼 공개된 장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영 제25조 등에 따라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 보유자를 지정하여 설치목적 범위 내에서 영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음
 - 다만, 관리규약에 따른 위반금 부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없음

55 아파트에서 불법(유턴)차량 신고용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 (문의) 아파트 입구 대로변에서 불법 유턴 차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있어 당 아파트에서 불법 유턴 차량을 신고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의거하여 관리주체는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아파트에서 설치하여 대로변 불법차량을 파악하여 신고 목적용으로 설치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유턴 차량 신고 목적으로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유턴 차량 신고 목적으로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없음

- 참고로, 교통단속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려면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단속 권한이 있는 자가 설치하여야 함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규정속도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에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법 제25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은 해당 교통단속 권한을 가진 자가 할 수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03-045호 참조)

56 공동주택 복도에 입주민이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 (문의) 복도식 아파트에서 8개월 전부터 이웃과 시끄럽다고 지구대에서 여러 번 다녀갔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 2대를 설치한 세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소지와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세대에서 카메라 제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치해도 되나요?

■ (답변) 공개된 복도에 설치할 수 있으나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해당함

- 공동주택에서 공개된 복도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이 경우 법 제25조에 규정된 안내판 설치, 안전성 확보조치, 처리방침의 공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35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에 응해야 함. 위반 시 과태료에 해당함
 - 다만, 개인이 자신의 집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자신의 집에 출입하는 사람만을 촬영하는 경우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나, 이웃 또는 지나가는 사람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촬영각도를 조절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함

◆ 공개된 장소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를 말함.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음

57 CCTV 촬영 안내문은 CCTV마다 부착해야 하는지?

■ (문의) 의료기관입니다. 복도·출입구·계단 등 공용공간에 CCTV가 100대가량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상정보 처리 지침에 따라 CCTV 촬영 안내판을 부착할 경우 설치장소마다 부착해야 되는지요?

■ (답변)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출입구나 정문, 안내데스크 주변 등에 대표로 1개의 안내판만 부착할 수도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및 표준지침 제39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물 내 여러 대의 CCTV를 설치한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출입구나 정문, 안내데스크 주변 등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대표로 1개만 부착할 수도 있음

58 CCTV 안내문에 꼭 책임자 이름을 넣어야 하는지?

- (문의) 근무중인 사업장에 CCTV 설치 안내문을 부착하려고 하는데, 항목 중 책임자정보는 부서명만 기입해도 되나요?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상황이라면 혹시 부서명과 전화번호만 기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CCTV 안내판 설치 시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을 기입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및 표준지침 제39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따라서, 안내판 설치 시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을 기입해야 하고 부서명과 전화번호만 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59

CCTV 영상을 노트북에 송출하여 직원 근태관리를 해도 되는지?

■ (문의) 안녕하십니까? 모 대학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입니다. 이 곳은 경비 실장을 포함하여 4명이 격일제로 근무하는데, 경비 실장이 본인 노트북에 CCTV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퇴근 후에도 집에서 근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법 위반이 아닌지요?

■ (답변) 개인 노트북으로 근태를 확인하려면 안전성 확보조치 및 노사협의 등이 필요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따라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취급자별 사용자 계정 발급, 비밀번호 설정, 인가받지 않은 자에 의한 외부 접속 차단 등의 접근통제 조치도 취해야 하며,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적 접근 및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 화면 옆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본체에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함. 위반 시 과태료에 해당함(영 제30조 및 표준지침 제3장)

- 따라서 경비실장 개인 노트북에 CCTV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근태를 확인하려면 안전성 확보조치 및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또한, CCTV로 근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4호에 따라 노사협의 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서 동의를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음

60 CCTV로 모니터링만 해도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 (문의) 최근 공연장 내부에 무대 및 객석 안전관리용으로 CCTV를 설치하였는데, 알아보니 관리자를 선임하고 대장을 만들어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등 법적조치 사항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만 사용하고 녹화기능은 꺼놓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답변) CCTV로 모니터링만 하고 녹화하지 않더라도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함

○ 공연장처럼 공개된 장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이 경우 법 제25조에 규정된 안내판 설치, 안전성 확보조치, 처리방침의 공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35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에 응해야 함. 위반 시 과태료에 해당함

- 한편, 모니터링만 하고 녹화하지 않더라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정보가 일시 저장·전송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함

61 공개된 채혈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문의) 안녕하세요? 병원인데요, 출입구는 통유리로 되어있어 외부에서도 볼 수 있으며 누구나 출입이 자유로운 채혈실에 환자 안전 및 도난 방지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탈의 등 사생활 침해도 없는 곳으로 CCTV를 설치하려면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공개된 채혈실이라면 CCTV 운영 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 장소의 경우 개인정보수집에 대해 제15조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함

-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공개된 채혈실이라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 다만, 비공개 장소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CCTV를 설치한 경우,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제35조에 따른 개인 정보 열람 등의 규정이 준용됨

◆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됨(「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

62 키즈카페는 CCTV 영상을 며칠간 보관해야 하나요?

■ (문의) 안녕하세요? 찾아보니 일반 상가 또는 가게의 CCTV는 최대 30일까지 보관가능이라고 되어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같은 경우 60일로 되어 있던데, 키즈카페(어린이 놀이카페)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최대 며칠까지 법적으로 보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보유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동안 보관하되, 보유기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30일 이내 보관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 촬영기간, 보관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때 보관기간은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면 됨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제2항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할 수 있음
 - 한편, 「영유아 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다른 법령에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위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를 하라고 되어있는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공개하면 되는 건가요?

- (답변)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여 공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2항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0조 제1항 제4호에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도록 하였음
 - 또한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도록 하였으므로 위탁자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야 함

64 간편결제사에 고객의 결제를 맡기면 위수탁에 해당하는지?

- (문의) 당사의 결제방식은 이용자가 간편결제 서비스사에 별도 가입 후 등록한 카드 등록 또는 선불결제한 포인트로 결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공하는 고객정보는 ID와 결제상품정보이며, 결제처리 결과만 통보받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계로 보아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및 관리 감독이 필요한지요?
- (답변) 위탁자의 업무를 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에 해당하며, 제휴사의 업무를 매개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고,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등 위탁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업무위탁’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모두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지만, 업무위탁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처리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고 수탁자가 위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제3자 제공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고 제3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됨
 - 예를 들면, 업무위탁은 전자투표 대행, 회계처리 대행, 간편결제 대행 등 위탁자의 업무를 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형태이고, 제3자 제공은 제휴사 복지포인트를 매개로 카드운영, 제휴사 포인트로 쇼핑몰 판매 등 제휴사의 업무처리를 매개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형태임

-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위수탁관계인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반드시 문서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비록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이러한 동의는 위수탁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서면에 의하지 않은 위수탁 관계가 동의로써 적법해지는 것은 아님(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인 반면,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참고)

65 산업안전보건법의 직무교육 기관은 수탁사에 해당하는지?

- (문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직무교육을 진행하도록 되어있고, 교육기관에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예:대한산업안전협회)은 개인정보 처리 수탁사에 해당하는지요?
- (답변) 법령에 따른 법정 위탁교육을 위해 직무교육 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음
 - ‘업무위탁’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모두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지만, 업무위탁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처리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고 수탁자가 위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제3자 제공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고 제3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위탁교육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직무교육 기관이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수탁자 모두 법 제26조를 준수하여야 함

66

병원을 영업양도하면서 고객정보를 넘길 때 고지해야 하는지?

■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가 운영하는 피부클리닉을 다른 분께 영업양도하면서 기존 고객 정보를 넘길 때 이를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는지요?

■ (답변) 영업양도·양수 계약시점에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보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알려야 하며, 알릴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함

- 따라서, 의료기관 영업양도·양수 계약시점에 이를 미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67 CCTV 열람 신청 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지?

■ (문의) CCTV 열람 신청 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인 부담인지, CCTV운영 담당기관 부담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열람에 드는 비용은 열람요구자가 부담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운영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사전에 공개한 열람절차와 방법에 따라 열람을 실시하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취한 후 열람물을 제공해야 함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한 정보주체에게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열람요구자가 비용을 부담함
 - 참고로, 시중에 보급된 비식별조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열람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권고함

68 이삿짐센터 직원의 고객 주소 누설이 법 위반인지?

■ (문의) 이삿짐센터 직원이 이사 가는 고객의 새로운 이사 갈 집 주소를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 (답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됨

- ‘누설’이란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 이삿짐센터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함.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대화하거나 전달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69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공문발송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

- (문의) 업무 담당자가 업무 처리과정에서, 해당 사업 참여자(민간인)의 건강검진 안내를 위해, 같은 기관의 부서별, 그리고 다른 기관별 대상자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발송하였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요?

- (답변)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하는 행위는 유출에 해당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가 금지됨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에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 따라서, 직원이 업무수행 중 처리하던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함

70 관리사무소 소장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위법한지?

■ (문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입주민 한 분이 개인적으로 본인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알려줬더니 최근 다수의 입주민들이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공개한 입주민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 (답변)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아파트 관리소장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를 사적으로 제공받아 제3자에게 제공하면 사인(私人)의 행위로서 처벌 규정이 없음

- 다만, 휴대전화 번호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제3자에게 알려주면 법 제19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 참고로, 공동주택과 관련한 개인정보처리자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직원, 수탁자, 입주자대표, 선거관리위원)가 업무로 알게 된 관리소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권한없는 제3자에 제공한 경우 제59조 제2호 위반에 해당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동의 또는 허용규정 없이 제3자에게 제공이 금지됨. 위반 시 처벌규정에 해당함

기획 및 집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은정 심사총괄담당관

유영관 심사총괄담당관 사무관

김지수 심사총괄담당관 주무관

이태형 심사총괄담당관 전문연구원(변호사)

2021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공 개 일 2022년 12월(수정본)

공 개 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 페이지 www.pipc.go.kr

상 담 문 의 ☎ 02-2100-3043
